

협동조합 전용자금 안내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을 빌미로 대가(성공보수, 서류작성 수수료, 보험가입)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, 제3자(브로커 등)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.

제3자(브로커 등)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.

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바랍니다.



신고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☎ 전국 1357)

〈개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〉

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정보주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이하 신용정보법)에 따라 다음 같은 권리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신용정보법 제35조 :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 청구권
- 신용정보법 제37조 :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- 신용정보법 제38조 :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

※ 접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 및 지역 센터



협동조합전용자금



협동조합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
시설·운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해드립니다.

▶ 융자대상

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 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※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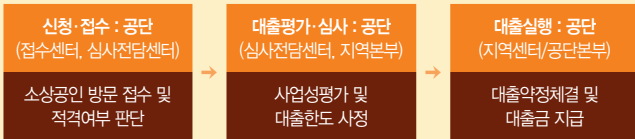
-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'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법인
-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'소상공인협동조합 공동사업' 지원대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법인
*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
- ③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법인
*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, 주된 업종이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
- ④ 위 ②, ③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며 영리사업"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법인
* 사업자등록(정관 상 수익사업 등재) 및 현장실사를 통한 영리사업여부 확인

▶ 융자조건

- 대출금리 : 2.76%(분기별 변동) * '18년 4분기 기준
- 대출한도 : 기업 당 5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)
- 대출기간 : 5년 (거치기간 2년 포함)

▶ 지원절차

〈 직접대출 융자절차 〉



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(정정) 안내

▶ 이용방법

「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」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신청(정정)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신청제한 대상

- ① 외국인, 1거주자로 보는 단체
- ② 사업자등록정정, 휴·폐업처리가 진행중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
- ③ 지분변동이 필요한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
- ④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
- ⑤ 임대차내역이 100건 이상 또는 공동사업자가 10인 이상인 경우
- ⑥ 사업자단위과세신청·정정

〈 사업자등록신청(정정) 이용안내 흐름도 〉



▶ 이용시간

• 사업자등록 신청·정정 등(연중무휴 6시 ~ 24시)

| 문의처 : 국세상담센터 (☎ 전국 126) |

■ 공통 구비서류

- ① 대출신청서(작성서류)
- ② 사업자등록증명 1부
- ③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노인복지카드, 장애인복지카드, 여권 등)
- ④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
- ⑤ 납세(국세)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 1부
- ⑥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
- ⑦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
- ⑧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1부
- ⑨ 사업장 및 거주주택 토지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각 1부
- ⑩ 주민등록표등본 1부
- ⑪ 금융거래확인서 각 1부 등
- ⑫ 협동조합 이사회 차입결의서, 협동조합 정관

■ 법인추가

- ① 법인 인감증명서 1부
-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사항 포함) 1부
- ③ 법인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

* 상담 후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
